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소다자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및 해외긴급 구호업무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외교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중유럽 외교 강화를 위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 상주 대한민국재외공관을 개설하면서 상주 공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등급 또는 6등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아프리카지역 외교 강화를 위하여 주에티오피아대사관 겸 아프리카연합대표부 정원 1명(8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9등급 1명)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18. ~ 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별표 1의 총계 “936”을 “938”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00”을 “702”로 하며,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14”를 “116”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총계 “938”을 “940”으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02”를 “704”로 하며,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14”를 “116”으로 한다.

별표 3의 총계 “1,483”을 “1,492”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1,483”을 “1,49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231”을 “232”로, 9등급 외무공무원 “125”를 “126”으로,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218”을 “223”으로,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274”를 “275”로,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41”을 “42”로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대한민국재외공관 한시정원표(제39조 관련)

1. 제39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총계	1
외무공무원 계	1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1

2. 제39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
외무공무원 계	2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한시정원) ①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외교부에 둔다.	제39조(한시정원) <삭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36</u>	<u>938</u>	+2
·	·	·	
·	·	·	
외무공무원 계	<u>700</u>	<u>702</u>	+2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 직공무원	<u>114</u>	<u>116</u>	+2
·	·	·	
·	·	·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38</u>	<u>940</u>	+2
·	·	·	
·	·	·	
외무공무원 계	<u>702</u>	<u>704</u>	+2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 직공무원	<u>114</u>	<u>116</u>	+2
·	·	·	
·	·	·	

[별표 3]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83</u>	<u>1,492</u>	+9
외무공무원 계	<u>1,483</u>	<u>1,492</u>	+9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 공무원	<u>231</u>	<u>232</u>	+1
·	·	·	
·	·	·	
9등급 외무공무원	<u>125</u>	<u>126</u>	+1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 직공무원	<u>218</u>	<u>223</u>	+5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 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u>274</u>	<u>275</u>	+1
·	·	·	
·	·	·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 원	<u>41</u>	<u>42</u>	+1
·	·	·	